

공평구역제15,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(안)을 위한 의견청취

의안 번호	110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5. .

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1. 건 명

공평구역제15,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(안)을 위한 의견청취

2. 상정사유

도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비기반시설의 확보를 통한 쾌적하고 활력있는 도심조성을 위하여 공평구역제15, 16지구를 하나의 지구로 변경과 동시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주용도(업무시설→판매및영업시설)를 변경코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출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입안내용

가. 공평구역 제15,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(안)

1)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구분	구역명	위 치	시행면적(㎡)	비 고
기정	공평구역 제15지구	인사동 110번지일대	-	
기정	공평구역 제16지구	인사동 100번지일대	-	
변경	공평구역 15, 16지구	인사동 87번지일대	13,767.70	

※기타 지구는 변경없음

2) 건축계획

구분	구역명	대지면적 (㎡)	건축면적 (㎡)	연면적 (㎡)	건폐율 (%)	용적률 (%)	층 수 (지상/지하)	높이	주 용 도
기정	공평구역 제15지구	5,039.0	1,764.0	26,450.0	35.0	525	15/3	-	업 무
기정	공평구역 제16지구	4,607.0	1,680.0	25,200.0	36.5	547	15/3	-	업 무
변경	공평구역 제15, 16지구	9,895.3	5,927.28	147,370.0 이하	60.0 이하	760 이하	19/9	84.6m 이하	판매및영업시설 업무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

※연면적 : 147,369.66㎡ (지상 75,072.12㎡, 지하 72,297.54㎡)

※대지면적 : 지적측량에 의한 대지면적 변경(증 249.3㎡)

3)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

구분	구역명	위 치	정비기반시설 (㎡)	비 고
기정	공평구역제15지구	-	-	
	공평구역제16지구	-	-	
변경	공평구역제15·16지구	종로구 인사동 123-3번지 일대	3,872.40	도로 : 3,808.1㎡ 공원 : 64.3㎡

4. 입안사유

도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비기반시설의 확보를 통한 쾌적하고 활력있는 도심조성을 위하여 공평구역제15,16지구를 하나의 지구로 변경과 동시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주용도(업무시설→판매및영업시설)를 변경하는 사항임.

5. 주민의견 청취 결과

- 1)건 명 : 공평구역제15,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
- 2)공람기간 : 2005. 3.11. ~ 2005. 3.25. (14일)
- 3)공고방법 : 공보·구홈페이지·관할동사무소 게시판 및 개별우편
- 4)공람장소 : 종로구청 도시계획과.
- 5)공람기간시 제출된 의견

연 번	의견 제출자		제 출 의 건	검 토 결 과
	성명	주 소		
1	거송종합 건설 (주)	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853-1 (인사동102-1 토지소유자)	○2004.12.1일자 소유권 변 동이 있었는바, 전 소유자 가 엑스코에 제출한 사업 동의서는 철회 요망	○동의서 인정(철회포함) 여부 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8 조에 의거 추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검토되는 사항임.
2	거송종합 건설(주) 거성토건 (주)	경기도 용인시 동천 동 853-1. 서초구 서초동 1543-1 (인사동 86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)	○굿모닝시티 자금이 유입되 는 등 부도덕한 유동수의 일방적인 공평 제15,16지 구의 합병을 반대하며, 제 2의 굿모닝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기타 안·허가 업무 가 중단될 수 있도록 처리 요망	○공평구역 제15,16지구 주변 여건상(문화재 양각규정 및 이면도로 확보) 공평구역 제 15,16지구를 하나의 지구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 입안한 사항이며, 구역변경지 정 여부에 대하여는 결정권자 인 서울시에서 결정될 사항임
3	굿모닝시 티계약자 협의회 일동 대표회장 조양상	중구 을지로6가 18-130 제일우행 빌딩 8층	○굿모닝시티 분양대금 72억 1천만원이 (주)엑스코제이 알티에 투입되었으며, 투 입된 자금에 대하여 불법 적으로 횡령한 혐의 등 불 법 범법적인 행위에 대하 여 조사중에 있으니 사업 을 승인하여 다수의 피해 자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 요망	○공평구역 제15, 16지구 사업 시행인가 등에 대하여는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.

따로붙임 : 위치도 및 관련도면 각1부. 끝.